

IPARK 가경 아이파크 5단지 일반공급(1·2 순위) 청약 요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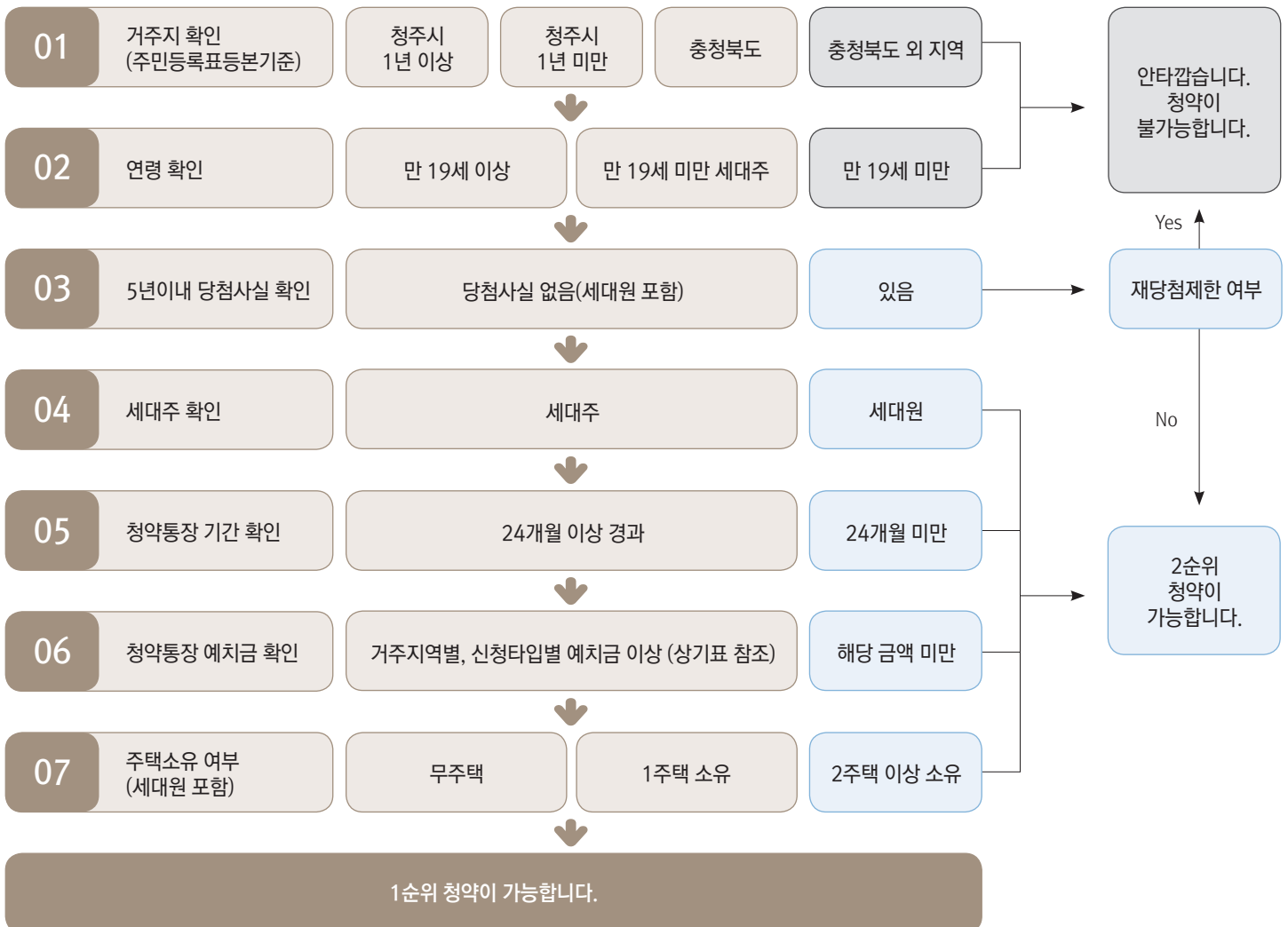
□ 1순위 청약 요건

구분	순위별 조건																					
	거주지역	세대주	당첨사실 제한	주택소유	청약통장																	
1순위 (당해)	청주시 (1년 이상 거주)	세대주만 가능	5년 이내 다른 주택(전국)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원포함) ※ 청약홈 확인	• 무주택, 1주택 : 1순위 청약 가능 • 2주택 : 1순위 청약 불가	•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 아래 지역별 예치금 이상																	
1순위 (기타)	청주시(1년 미만 거주) 및 충청북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청주시 및 충청북도</th> <th>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th> <th>기타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구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2순위 청약 요건

구분	순위별 조건				
	거주지역	세대주	재당첨 제한	주택소유	청약통장
2순위	청주시 및 충청북도	세대원도 가능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 청약 불가 (세대원포함) ※ 청약홈 확인	2주택(분양권 등 포함) 이상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도 2순위 청약 가능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면 2순위 청약 가능 (가입기간, 금액 상관없음)

□ 1순위 청약 요건 Self Check



IPARK 가경 아이파크 5단지 청약 가점 산정 기준

□ 주택형별 1순위 청약 가능 여부

구분	배정비율		청약 가능 여부					비고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추첨제																			
			무주택	무주택	1주택 처분조건	1주택	2주택 이상																
84.8743(84A)	75%	25%	○	○	○	○	X	<일반 공급 물량 배정 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85 이하</th> <th>85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 가점제 신청자 (무주택자)</td> <td>우선공급 75%</td> <td>우선공급 30%</td> </tr> <tr> <td>1순위 추첨제 신청자 (무주택자)</td> <td>추첨제 25% 中 75%</td> <td>추첨제 70% 中 75%</td> </tr> <tr> <td>1순위 추첨제 신청자 (1주택처분조건)</td> <td>추첨제 25% 中 25%</td> <td>추첨제 70% 中 25%</td> </tr> <tr> <td>1순위 신청자 (1주택 소유)</td> <td colspan="2">잔여물량이 있을 경우</td> </tr> </tbody> </table> ※ 추첨제 공급시 1순위 가점제 신청자 중 당첨이 되지 않은 자는 추첨제에 자동으로 참여	구분	85 이하	85 초과	1순위 가점제 신청자 (무주택자)	우선공급 75%	우선공급 30%	1순위 추첨제 신청자 (무주택자)	추첨제 25% 中 75%	추첨제 70% 中 75%	1순위 추첨제 신청자 (1주택처분조건)	추첨제 25% 中 25%	추첨제 70% 中 25%	1순위 신청자 (1주택 소유)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구분	85 이하	85 초과																					
1순위 가점제 신청자 (무주택자)	우선공급 75%	우선공급 30%																					
1순위 추첨제 신청자 (무주택자)	추첨제 25% 中 75%	추첨제 70% 中 75%																					
1순위 추첨제 신청자 (1주택처분조건)	추첨제 25% 中 25%	추첨제 70% 中 25%																					
1순위 신청자 (1주택 소유)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84.7993(84A1)	75%	25%	○	○	○	○	X																
84.8833(84B)	75%	25%	○	○	○	○	X																
101	30%	70%	○	○	○	○	X																
116	30%	70%	○	○	○	○	X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은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IPARK 가경 아이파크 5단지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청약 가점제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청약가점 계산해보기	